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99
----------	------------

제안년월일 : 2025년 4월 23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외에 특정 무늬 형태를 충돌방지 대책의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함

2. 주요 골자

- 충돌방지 방법 패턴 삭제(안 제2조제4호~제7호, 안 제5호제1항제1호~제3호)
-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제4항)
-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관리”를
“설치·관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
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제2항 중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를 “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제2조(정의)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 음)
		4.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 가 투명유리를 인식 할 수 있도록 일정 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 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삭 제〉
		5.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 리 위에 세라믹 등 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삭 제〉
		6. “데칼”이란 데칼코 마니(decalsoma	〈삭 제〉

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진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삭 제〉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① -----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
치·관리하여야 한
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
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서
울시 조류충돌 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설치·관리-----
-----.

〈삭 제〉

〈삭 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
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
는 소유주, 관리자 등
에게 사업 추진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⑤ (생 략) 제6조(일반 건축물 등 에 대한 권고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 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을 안내할 수 있으며, <u>사업 추진에 필요한</u> <u>비용의 전부 또는 일</u> <u>부를 예산의 범위에</u> <u>서 지원할 수 있다.</u>	<u>원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일반 건축물 등 에 대한 권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수 ----- ----- ----- ----- -----.
--	---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충돌 방지 대책)”을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최소화</u> <u>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u> ----- -----.
제4조(충돌 방지 대책)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② (생 략)

제6조 ~ 제8조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